스위스와 싱가포르의 자진신고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두 관할권 모두 당국이 발견하기 전에 미신고 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합니다. 스위스는 연방직접세법 제175조 제3항 및 이에 상응하는 칸톤(주)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벌금 없는 자진신고를 허용합니다. 납세자는 최대 10년분의 추징세액과 이자를 납부하지만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국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어야 하고, 납세자가 전면적으로 협력하며 납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합니다.[1] 싱가포르 국세청(IRAS)의 자진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 Programme)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의 자진신고에 대해 가산세를 0으로 감면합니다. 그 이후에는 과소부과 세액에 대해 연 5%의 정률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신고가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2] 2021년 이후 두 곳 모두에서 이러한 자진신고의 가장 흔한 대상은 미신고 가상자산입니다.

단계	스위스	싱가포르
1. 사실관	최대 10년간의 지갑 및 거래소 거래내역 재구성; 부유세 목적상 연방세무청(FTA)의 연말 가격으로 평가; 소득 발생 사건(스테이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연도(일반적으로 4년, 사기의 경우 더 장기)의 거래내역 재구성; 차익을 자본 또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단계	스위스	싱가포르
계 조사	킹, 에어드롭, 채굴) 및 직업적 거래자 지위 위험 파악	는 수익으로 분류; 소득 발생 사건 파악
2. 요건 충족 여부	당국의 사전 인지가 없었는지, 해당 납세자의 첫 자진신고인지, 전면적 협력이 가능한지 확인	IRAS의 질의 또는 세무조사 통지 이전의 자발적 신고인지 확인; 완전성 확인
3. 신고	완전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칸톤 세무당국에 서면 자진신고; 각 연도별 수정신고	myTax Portal을 통한 신고 또는 수정신고서 및 계산서를 첨부한 서면 제출
4. 부과	최대 10년분의 추징세액 및 지연이자; 벌금 없음; 직업적 거래자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 노령·유족연금(AHV) 보험료	과소부과 세액 및 가산세 0%(1년 이내) 또는 연 5%;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소 없음
5. 기간	칸톤 및 규모에 따라 3–12개월	3–9개월
6. 전문가 비용	재구성 및 신고에 CHF 15,000–60,000; 포렌식 회계는 별도	S$ 10,000–50,000; 포렌식 회계는 별도

두 나라 모두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단계는 재구성 단계입니다. 일부는 이미 사라진 여러 거래소에 걸쳐 10년간 활동해 온 납세자는 취득원가를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세무당국 모두 국고에 유리한 추정치를 적용합니다. 실무상의 조언은 문제를 파악하는 즉시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가산세 면제 기간과 스위스의 사전 인지 부재 요건은 모두 지체하면 상실됩니다. 게다가 2027년과 2028년에 시작되는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 정보교환은 당국에 요건 충족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3]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국경 간 관점

두 나라에서 모두 거주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두 건의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발견 위험이 더 높고 제재 체계가 더 엄격한 관할권에서 신고하십시오. 미신고 재산의 경우 이는 대개 스위스입니다. 부유세 체납액이 매년 누적되고, 칸톤 세무당국이 이미 현재 공통보고기준(CRS) 정보를 수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싱가포르에서 신고하십시오. 싱가포르는 소득에만 과세하는 체계이므로, 보유자산이 자본자산이었다면 많은 연도에서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신고에서는 싱가포르의 상황을, 싱가포르 신고에서는 스위스의 상황을 각 당국이 필요로 하는 범위를 넘어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두 세무당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제25조에 따라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

1. 연방직접세법 제175조 제3항 및 제181a조(법인); 조세조화법 제56조 제1bis항; 제G편 제VIII장 참조. ↩
2. IRAS e-Tax Guide, IRAS' Voluntary Disclosure Programme(개정판);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47), ss. 95 및 96(가산세); 제M편 제VIII장 참조. ↩
3. CARF 보고와 자진신고 요건의 상호작용은 제G편 제VII장 및 제M편 제VII장에서 다룹니다.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